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월 1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8년 1월 21일) 상정
-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8년 1월 21일) 수정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 제안이유

- 2001. 4. 23부터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부천시 체육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천시 내부지침인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규정(훈령)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것을 조례로 새로 정하고

※ 훈령 : 관공서 따위에서 내부조직이나 사무집행 따위를 정하여 놓은 준칙

- 주차요금 및 유료주차시간의 조정, 주차요금 감면 조항 강화, 차량부제 운행근거 마련, 주차장관리 위탁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유료운영 시간 및 주차요금 징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및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 무료주차권의 발행과 주차권 발행제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다. 징수한 주차요금의 관리방법과 단체 등에서 행사를 개최할 경우의 부설주차장을 이용신청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라. 부설주차장의 장기방치차량의 처리방법과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마.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이용자가 준수할 사항 및 손해배상 면책 범위 등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바. 부설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및 제20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주차요금 감면조항중 장애인에 대한 50% 감면은 운영상 현실성이 없으므로 전액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 주차장 조례와 통일을 기한 감면규정임.
○ 주차장 조례와 감면대상이 서로 틀린 부분이 있는데?	○ 수정이 필요함.
○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나눔쿠폰으로 징수규정을 일원화하는 것이 어떠한가?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감면규정을 정한 사항임.
○ 징수요금 관리조항중 ‘납입하여야 한다’는 ‘입금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용어의 정의상 적합하다고 보는데?	○ ‘입금하여야 한다’가 적합한 것으로 해석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중 800cc이하의 자가용 소형차량은 법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1,000cc이하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경형자동차로 함이 타당하다고 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209호
의결년월일	2008. 1. 23 (제141회)

제안년월일 : 2008. 1. 18.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규정중 자원봉사증과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대한 개념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자원봉사 나눔쿠폰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고,
- 동 조례에서 정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이 상위규정에 해당하는 부천시 주차장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이를 수정함.

2. 주요골자

-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징수규정을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자원봉사 나눔쿠폰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통일함.(안 제5조2항2호, 제5조4항)
- 주차요금 전액 감면대상에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차량을 자가운전하는 차량(유효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을 추가함.(안 제6조1호)
-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대상중 ‘800cc이하의 자가용 소형차량 및 1천cc이하의 영업용 소형차량’을 경차기준이 1,000cc이하로 변경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 수정함.

(안 제6조3호나목)

-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대상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서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을 추가함.(안 제6조3호다목)
- 징수요금 관리규정중 ‘납입하여야 한다’를 ‘입금하여야 한다’로 용어상 정의를 수정함.(안 제10조1항,2항)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제2항 2호을 삭제한다.

제5조 제2항 3호을 2호로 한다.

제5조 제2항 4호를 3호로 한다.

제5조 제2항 4호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자원봉사 나눔쿠폰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1호 차목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차량을 자가운전하는 차량(유효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을 신설한다.

제6조 제3호 나목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 수정한다.

제6조 제3호 다목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서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을 신설한다.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용어중 ‘납입하여야 한다’를 ‘입금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조례안과 동일함.』

신·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5조(주차요금의 징수)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u>주차요금에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표기된 금액을 차감하여 징수하여야 한다.</u> 3. <u>1회주차요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1회 주차권을 발행하여 징수하며, 입차 후 1일 이용을 기준으로 1일을 초과할 때 마다 매 1일마다 요금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u> 4. <u>정기주차요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주차권을 발행한 달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징수하며, 잔여일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u></p> <p>③ (생략) ④ <u>시가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자에게는 주차요금을 정상주차요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징수한다. 이 경우 자가운전자가 원할 때에는 자원봉사 관련 나눔쿠폰에 기재된 점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차감징수할 수 있다.</u></p> <p>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생략) 1. (생략) 가~자. (생략) (<u>신설</u>)</p> <p>2. (생략) 3. (생략) 가. (생략) 나. <u>800시시 이하의 자가용 소형차량 및 1천시시 이하의 영업용 소형차량</u> (<u>신설</u>)</p>	<p>제5조(주차요금의 징수)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u>삭제</u>)</p> <p>2. (<u>조례안과 같음</u>)</p> <p>3. (<u>조례안과 같음</u>)</p> <p>4. <u>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자원봉사 나눔쿠폰으로 징수할 수 있다.</u></p> <p>③ (조례안과 같음) ④ (<u>삭제</u>)</p> <p>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가~자 (조례안과 같음) 차. <u>「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차량을 자가운전하는 차량(유효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u></p> <p>2.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가. (조례안과 같음) 나. <u>「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u> <u>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서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u></p>

조 례 안	수 정 안
<p>제10조(징수요금의 관리) ① 관리기관은 수납된 주차요금을 징수한 당일에 시금고의 업무마감시간까지 <u>납입</u>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의를 한 후 <u>납입</u>하여야 한다.</p> <p>② 시금고의 업무마감시간 이후에 수납된 주차요금은 다음 날 일일결산하여 시금고의 업무개시시간에 맞추어 <u>납입</u>하여야 한다.</p>	<p>제10조(징수요금의 관리) ① ----- ----- -----<u>입금</u>----- ----- -----<u>입금</u>----- --.</p> <p>② ----- ----- -----<u>입금</u>----- -----.</p>

[수정안 포함]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설주차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이란 공공체육시설에 설치된 모든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주차요금”이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일정시간 주차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1회주차요금”이란 차량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차할 때 마다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1회주차권”이란 1회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발급받은 증표를 말한다.
5. “정기주차요금”이란 차량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1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정기주차권”이란 정기주차요금을 납부하고 발급받은 증표를 말한다.

제4조(주차장의 운영시간) ① 부설주차장의 유료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차수요와 지역여건 등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시장의 승인

을 얻어 유료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무료개방시간에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1회주차요금과 정기주차요금으로 구분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1. 1회주차요금은 입차 또는 출차할 때, 정기주차요금은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때 징수하여야 한다.

2. 1회주차요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1회주차권을 발행하여 징수하며, 입차 후 1일 이용을 기준으로 1일을 초과할 때마다 매 1일마다 요금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3. 정기주차요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주차권을 발행한 달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징수하며, 잔여일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4.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자원봉사 나눔쿠폰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주차권의 관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부설주차장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차권을 발행하는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에 부착하는 방법

3. 측정계기로 측정하는 방법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대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나. 부설주차장 수탁자의 업무용 차량

다. 무료주차권을 소지하고 시 및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 또는 행사에 참여한 차량

라.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의 차량

마. 공무수행 증표를 부착한 차량

바. 언론기관 증표를 부착한 언론취재용 차량

사. 체육시설회원증을 소지한 자로서 월 사용료를 납부하는 차량

아. 성실납세증표를 부착한 차량(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자. 업무상 방문 확인을 받은 차량(유효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차량을 자가운전하는 차량(유효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2. 2시간 무료주차 이후 50퍼센트 감면대상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미망인의 자가운전 또는 당사자가 동승한 대리운전 차량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3등급 이상 장애인의 자가 운전 또는 당사자가 동승한 대리운전 차량

3. 50퍼센트 감면대상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등급 이하 장애인의 자가운전 또는 당사자가 동승한 대리운전 차량

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서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제7조(주차요금의 반환) ① 제5조에 따라 1회주차요금을 징수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1호자목의 사유로 입차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정기주차요금 중에서 시설물유지보수 등 관리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일수의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수리·검사 또는 휴가·출장 등 귀책사유가 이용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무료주차권의 발행) ① 시장은 시 및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체육경기 또는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주차권을 발행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권의 발행제한 등) ① 정기주차권은 주차면수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주차수요가 주차면수를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회주차권의 발행 제한 및 정기주차권 소지차량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제한 사유를 적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수요 환경 및 에너지절약 정책에 부합하도록 주차장에 입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차량부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기주차권을 발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기주차권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정기주차권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 발급을 받는 경우의 제작비용은 재 발급을 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징수요금의 관리) ① 관리기관은 수납된 주차요금을 징수한 당일에 시금고의 업무마감시간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의를 한 후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의 업무마감시간 이후에 수납된 주차요금은 다음 날 일일결산하여 시금고의 업무개시시간에 맞추어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장의 이용협약) ① 시장·구청장 또는 단체에서 행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승인신청서를 관리기관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이용승인을 받은 단체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행사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행사개최일 전일까지 부설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행사당일 주차질서 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용구역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방치차량의 조치) ①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장기방치차량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한 후 견인보관소로 이동·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장기방치차량 이동요청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차량 소유자가 견인보관소에 보관 중인 차량을 찾아가고자 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주차요금과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요금·보관요금을 견인보관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장기방치 차량에 대한 납부액은 세입예산별로 사후에 정산한다.

제13조(피해보상 등) ① 부설주차장 안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액의 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② 부설주차장 이용 시 차량열쇠는 차량소유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차량 및 차량 안의 물건 등의 도난·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표식) 관리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용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제한) 부설주차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입차를 금지하거나 출차를 명하는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주차장 구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일 때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때
3. 부설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할 때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이용자 준수사항) 부설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 출입차량은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안에서는 경음기 사용을 금지한다.
3. 주차장 안으로는 발화성·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4. 주차 차량 안 귀중품 보관을 금지한다.

제17조(면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2. 폭동이나 소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3. 이용차량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피해(장기방치차량을 포함한다)

4. 주차차량 안 귀중품의 보관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5. 법령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발생한 피해
6. 대형차량 주차구역 또는 주차구역 외 주차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7. 주차장 관리시간 외 주차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제18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과 함께 위탁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으로 한다.

③ 위탁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체육시설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0조(감독) 시장은 필요 시 관리기관에게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주차요금은 이 조례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시 설 명	위 치
부천종합운동장	하부주차장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부설주차장	
부천체육관	부설주차장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24번지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00-1번지
송내사회체육관	부설주차장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57번지

[별표 2]

부설주차장 유료운영시간(제4조제1항 관련)

명 칭	시 설 명	유료운영시간
부천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연중 24시간
	하부주차장	06:00~22:00
부천체육관	부설주차장	06:00~22:00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06:00~22:00
송내사회체육관	부설주차장	06:00~22:00

[별표 3]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1회 주차요금	정기주차요금	비 고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1,500원	월 30,000원	
15인승 이상 승합차 2.5톤 이상 화물차	4,000원	월 100,000원	
25인승 이상 승합차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차	4,500원	월 120,000원	
입주시설 상근근무자 체육시설 수탁단체 직원	-	월 20,000원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

[앞면]

◀ 정기주차권(PARKING CARD)
(심별마크)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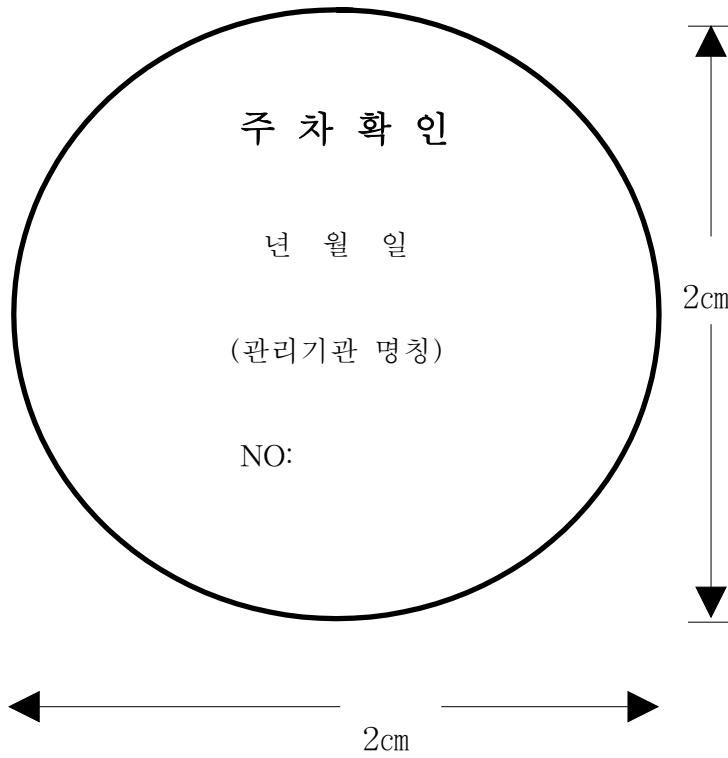
※ 재질: 플라스틱(8.5cm×5.4cm)

[뒷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이 주차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2.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도난, 분실 등은 책임지지 않습니다.3. 자석이나 열을 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4. 이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분실하신 경우에는 재발급에 따른 카드요금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5. 기간이 지났거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카드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3호서식]

업 무 방 문 확 인 표



[별지 제4호서식]

무 료 주 차 권

- 행사명칭:
- 주차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 주관부서:

※ 유의사항

- 이 무료주차권은 발급받은 사람에게만 지정된 시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일일요금이 징수됩니다.)
- 출차할 때에는 1회주차권과 무료주차권을 관리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정기주차권 발급대장					
연번	소속	성명	차량번호	발급일자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6호서식]

일 일 결 산 서

일 자: 년 월 일

주차표(주차영수증) 수불현황

결 재			

1 일 주 차 권				정 기 주 차 권			
제작매수	사 용 분		잔 매	제작매수	사 용 분		잔 매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주차요금 수납 현황

구 분	총입차량 총 계	면 제 차 량				징 수 차 량	
		소계	업무방문 (1시간 이내)	업무방문 (1시간 초과)	기 타	대 수	금 액
일 계							
누 계							

인계인수사항

계	시금고 마감 이후 수납된 주차요금	수납된 주차요금	인계자	인수자
매 원	매 원	매 원	(인)	(인)

방치차량이동

차량번호	들어온 시간	이동일시	주차요금	비 고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이용승인신청서

1. 주차장 명칭:
2. 이용신청자
 - 주 소:
 - 성 명: (전화)
3. 이용목적:
4. 이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5. 예정 주차대수: 대
6. 이용구역: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이용승인서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별지 제9호서식]

(NO:)

무단방치차량 조치계획

1. 차량 번호:

2. 입차 일시: 년 월 일 (시 분)

3. 72시간 경과시점: 년 월 일(시 분)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서 장기방치차량에 대하여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주차영수증
첨부란

년 월 일

결 재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NO:)

장기방치차량 이동요청서

1. 차량번호:
2. 입차시간: 년 월 일 (시 분)
3. 이동요청시간: 년 월 일 (시 분)
4. 받아야할 주차요금: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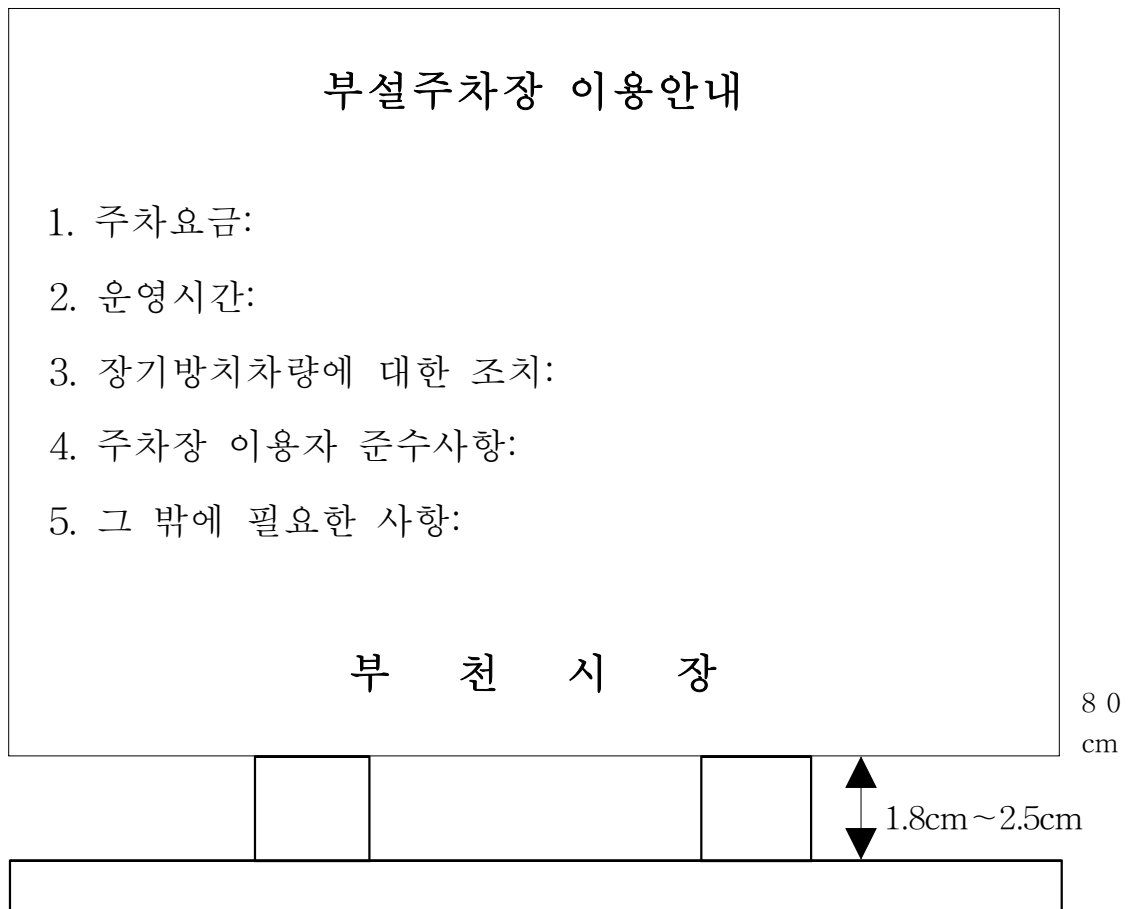
위 차량은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내의 장기방치차량으로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견인보관소로 이동·보관하고자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

[별지 제11호서식]

부설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 규 격: 가로 90cm×세로 80cm

재 질: 알루미늄판

색 채 : 녹색바탕에 흰색글씨(고딕체)